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: 2011년 1월 27일

신한 BNPP 봉쥬르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(H)[주식]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 1. 종류 직판 수익증권의 신설
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 직판 수익증권의 신설	< 제1부>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 제2부>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1. 매입, 환매 및 전환기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< 종류 명칭 및 가입자격 >	< 제1부>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 제2부>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1. 매입, 환매 기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< 종류 명칭 및 가입자격 > < 신설 > - 종류 직판 수익증권 :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< 신설 > 종류 직판 수익증권 - 환매수수료 :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연 0.780% - 판매회사보수 : 연 0.000% - 신탁업자보수 : 연 0.060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연 0.025% < 기타 관련 정보 변경 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 제2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(신설) 종류 직판 수익증권의 신설

간이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1. 종류 직판 수익증권의 신설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종류 C-1 수익증권의 신설	< 제1부>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 제3부> 1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.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, 환매 및 절차 < 종류 명칭 및 가입자격 > < 신설 >	< 제1부>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 제3부> 1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.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, 환매 및 전환 절차 < 종류 명칭 및 가입자격 > < 신설 > < 신설 > - 종류 직판 수익증권 :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 < 신설 > 종류 직판 수익증권 - 환매수수료 :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 - 집합투자업자보수 : 연 0.780% - 판매회사보수 : 연 0.000% - 신탁업자보수 : 연 0.060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연 0.025% < 기타 관련 정보 변경 >

집합투자규모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1. 종류 직판 수익증권의 신설

항목	변경전	변경후
1. 종류 직판 수익증권의 신설(계속)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< 종류 명칭 및 투자자격 > < 생략 >	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 < 종류 명칭 및 투자자격 > < 현행과 동일 > - < 신설 > 종류 직판 수익증권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
1. 종류 직판 수익증권의 신설	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< 생략 > 1. ~ 8. < 생략 > <신설>	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< 현행과 같음 > 1. ~ 8. < 현행과 같음 > 9. 종류 직판 수익증권
1. 종류 직판 수익증권의 신설에 따른 보수 적용	제39조 (보수) ① ~ ② < 생략 > ③ < 생략 > 1.~8. < 생략 > <신설>	제39조 (보수) ① ~ ② < 현행과 같음 > ③ < 현행과 같음 > 1.~8. < 현행과 같음 > < 신설 > 9. 종류 직판 수익증권 A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7.80] B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00] C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60] D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[0.25]
1. 종류 직판 수익증권의 신설에 따른 판매수수료 적용	제40조 (판매수수료) ① < 생략 >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 1.~3. < 생략 > 4.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5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: 없음	제40조 (판매수수료) ① < 현행과 같음 >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 1.~3. < 현행과 같음 > < 신설 > 4.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5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, 종류 직판 수익증권: 없음
1. 종류 직판 수익증권의 신설에 따른 환매수수료 적용	제41조 (환매수수료) ① < 생략 >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~2. < 생략 > 3.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5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: 90일 미만 이익금의 70%	제41조 (환매수수료) ① < 현행과 같음 >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~2. < 현행과 같음 > 3.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2 수익증권, 종류 C3 수익증권, 종류 C4 수익증권, 종류 C5 수익증권, 종류 C-i 수익증권, 종류 직판 수익증권: 90일 미만 이익금의 70%